



---

### 제3장

무형문화유산의 진흥과 활용,  
어떻게 실현할까



# 무형문화유산의 제도적 보호를 위한 한국의 경험

임돈희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한국은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경사회였으나 1960년대 이후 산업화로 인하여 많은 인구가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는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문화의 영향이 모든 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러한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서구화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삶이 급격하게 사라지게 되었고 전통적인 삶의 표현으로써 전통적인 삶에 기반한 전통 예술, 의례 등과 같은 무형문화유산들이 급속하게 사라지는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이에 무형문화재 제도를 도입하여 현대문명에 밀려 사라져가는 전통 문화 중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지정하여 보존, 전승하고자 하였다.

‘무형문화유산’이란 음악, 무용, 연극, 놀이, 의례, 무예 등과 이들과 관련된 예술과 공예를 비롯해 음식 등 각종 생활용품을 제조하는 기술로서 역사적 또는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한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은 일정한 형체없이 전승되어 온 예술이나 기술이므로 사람에게 의해서 실현될 때에만 그 모습을 볼 수 있거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을 보존, 전승한다는 것은 그 예술이나 기술을 전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그 예술이나 기술을 보유한 사람 중 우수한 사람을 함께 인정하여 해당 무형문화재를 전

승하도록 하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유산의 예능 또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중요무형문화유산 보유자라고 하며 이들을 한국에서는 보통 “인간문화재”라고 부른다. 영어로 하면 “Living Human Treasures”이다.

1960년대에 이 제도를 제정한 것은 한국 사회에서 무형문화유산 개념의 발전에 있어서 획기적인 것이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대체로 문화유산이라고 하면 과거의 건축물과 고정되어 있거나 눈에 보이는 구조물을 의미하는 것이며 예술성이 뛰어나 보존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반면, 무형문화유산은 건축물과 같이 영속성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항상 가변적인 것이기 때문에 고정된 대상물을 의미하는 문화유산의 개념으로 보면 생소한 것이기도 하였다.

또한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 중에는 한국만의 독특한 민속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민속은 대부분의 사회에서 엘리트 계층의 고급 예술에 비해 열등한 것, 그리고 다소 유치한 것으로 여겨져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보존은 커녕 발전의 장애물이기 때문에 타파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 결과 아무도 민속예술을 배우려 하지 않았고 결국 민속예술은 문화발전 과정에서 소멸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민속은 과거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화, 산업화 그리고 현대화 과정에서 그 생활 현상이 사라지면 같이 사라지게 마련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무형문화재제도와 같은 인위적인 보존 정책이 실시되지 않았다면 많은 민속예술 행위가 사라져 갔으리라 믿는다.

1962년 한국 정부는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여 문화재 보호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법에 근거한 무형문화재 개별 종목 지정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신청을 하면 정부는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하고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에서는 그 지정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동 문화유산이 역사상, 학술상, 예술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심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한다.(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청장의 자문기관이지만 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한번도 거부한 적이 없어 실질적인 결정기구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문화재청에는 7개 분과에 총 80여명의 문화재 위원이 있다. 무형문화재 분과위원회는 13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뿐만 아니라 지정된 문화재의 전승을 위하여 해당 중요무형문화재 원형의 기능적, 예술적 가치를 판단하여 그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체득, 보유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하여 해당 문화재가 전승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극, 의식 등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의 성질상 한 사람이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수의 사람을 단체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지정한다.

한국 무형문화재제도의 또 하나의 특성은 문화유산을 지정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승하기 위해 제도적 배려를 한다는 것이다. 이 전승체계는 매우 치밀하고 체계적이다.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된 인간문화재는 그들이 가진 예능과 기술을 전승할 후학을 양성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후학의 전수교육의 실시에 따른 보상으로 인간문화재에게 현재 한국정부에서 월 100-130만원(\$900-1,100)을 지급하고 있으며 기타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인간문화재는 이런 공식적인 혜택을 받는 것 외에 그들의 사회적 지위도 상승하게 된다. 과거 한국 사회에서는 예능인들을 존경보다는 천시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문화재 제도는 예능인들에게 경제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 상승과 개인적 자긍심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 무형문화유산 종목의 전승교육체계

### (1) 전수생 교육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전수생을 발굴하여 전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전수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은 중요문화재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추천하여 전수 장학생으로 선발된다. 전수 장학생은 국가로부터 소정의 장학금을 받는다.

### (2) 이수자제도

전수생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 해당 분야의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심사하여 그 기능 또는 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면 이수자로 선정된다.

### (3) 전수교육조교

이수자중에 뛰어난 기량을 가진 사람은 인간문화재를 도와 전수생과 이수자 교육을 담당한다. 이들 전수교육조교에게도 소정의 국가 지원이 따른다.

따라서 전승체계는 전수생, 이수자, 전수교육조교, 인간문화재, 명예 인간문화재(인간문화재 중 병역이나 고령으로 전수교육을 담당하지 못할 경우 현역에서 은퇴하여 명예인간문화재로 대우하며 그 명예를 유지하도록 한다)의 5단계가 있다.

현재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종목은 126개에 이르며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보유자는 185명, 전수교육조교는 299명, 이수자는 4,017명, 전수 장학생은 71명에 이른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소속단체는 매년 1회에 걸쳐 공개 공연을 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예능이 단절이 되지 않고 전승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전승 활동을 돕기 위하여 전승 공간을 건립하여 제공하기도 한다. 전승 공간은 해당 무형문화재가 전승되는 지역에 건립함으로써 지역의 문화 전승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영상, 음반, 도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기록화 작업을 통해 영구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50년간에 걸친 노력으로 사라져갈 뻔했던 많은 무형문화유산들이 보존, 전승되어 왔다. 2003년 여론조사에서도 한국 국민의 83%가 인간문화재제도가 무형문화유산 보존에 기여한 바 있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어느 제도든지 완벽한 것은 아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축적해온 지 50여 년이 지난 지금, 무형문화유산 보존과 전승 방안에 대한 새로운 쟁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몇 가지 쟁점들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문화 특히 무형문화유산을 인위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문화는 흐르는 물과 같아서 항상 변하게 마련이고 그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제 기능을 하지 않는 문화는 사라져가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과거의 문화는 사라져가는 대신에 새로운 문화가 창출되기 때문에 구태어 인위적으로 사라져 가는 문화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무형문화유산의 인위적인 보호 및 보존을 주장하는 측은 다른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오늘날 많은 사회에서 사라져가는 전통 문화는 대부분의 경우 그 민족, 국가, 종족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특히 비서구 사회의 경우 더욱 그렇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서구 국가에서도 옛날의 전통 문화는 사라져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서구 국가와 비서구 국가의 상황은 다르다. 서구 국가에서는 사라져 가는 전통 문화도 자기 것이고 또 새로이 생성되는 현대 문화도 자기 것이지만 비서구사회의 경우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는 자기 것이지만 새로이 유입되는 현대 문화는 서구문화의 것일 경우가 많다. 좋은 예가 전통 음악이다. 한국에서도 대표적인 전통 음악인 판소리는 60년대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외면당하고 대신 서구 음악(예로 서양오페라나 팝송)이 들어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판소리를 부르는 창자는 초빙하는 곳이 없어 생계에도 지장을 받는 반면 서구 음악을 하는 사람과 청중의 수는 급증한 것이다. 만약에 한국 정부의 무형문화유산 정책이 없었더라면 판소리는 사라져

갔을지도 모른다. 현재 많은 한국 사람들이 판소리보다는 서양 음악을 더 즐겨 듣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판소리는 우리의 고유 음악이라고 생각하고 팝송이나 오페라는 서양음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많은 무형문화유산들은 그 집단의 고유한 문화로서 집단의 정체성을 상징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보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는 무형문화유산은 유형문화유산과 달리 어느 시기에 만들어진 고정된 문화유산이 아니라 어떤 집단에 의해 계속 향유되고 표현되는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그 모습은 계속 변화한다. 그런데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한다면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다. 어떤 학자들은 무형문화유산이 지정될 당시의 모습을 충실하게 유지 보존하여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다. 전통적인 모습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될수록 지정 당시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무형문화유산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무형문화유산의 박제화를 가져온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무형문화유산은 변화하는 사회관계에 맞추어 연행되어야 하며 현대 청중과 유리된 과거의 모습으로 공연된다면 현대 관객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사회와 유리되어 박제화 된다고 주장한다.

많은 민속예술의 경우, 탈춤을 예로 들자면, 탈춤은 탈을 쓴 연기자들이 지배계급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춤과 대사로 표현하는 전통 연극이다. 이러한 민속 연극은 청중의 호응이 없어 급속히 사라져갈 위험에 처해 있었다. 1960년대 당시 이를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고 그 연극을 가장 잘 연기하는 사람을 인간문화재로 지정하여 전수하도록 하였다.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사람들은 충실히 춤과 대사를 지정된 당시의 모습대로 재현하고 전수하고 있다. 그런데 이 탈춤을 배우고 전수하는 젊은 사람들 특히 대학생들 가운데서 탈춤의 대사 내용이 너무 과거 지향적이기 때문에 현대 젊은이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왔다. 따라서 탈춤이 현대인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과거의 지배계급인 양반에 대한 풍자보다는 현재의 정치인이나 재벌에 대한 비판으로 바꾸고 대사도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해하기 힘든 과거의 언어가 아닌 현대어로 바꾸어서 전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 당시의 무형문화유산의 모습을 전승시키자는 측의 논리는 박물관에 전시된 유형문화재는 한 시대의 산물이지만 거기에서 후세 사람들이 영감을 얻는 것처럼 무형문화재도 한 시대의 산물로 인정하고 거기에서 재창조의 영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우리가 변화를 인정하고 그 변화된 모습을 전승한다면 옛 모습은 결국 사라져 간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탈춤은 1970년대, 80년대에 대학가에서 반체제 이념을 주장하는 민중극의 모델이 되었고, 농악은 현재 젊은이들에게 가장 각

광을 받는 사물놀이의 모델이 되고 있다.

무형문화재의 지정 당시의 모습을 보존하는 것을 옹호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급변하는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라도 보존하지 않으면 전통의 모습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변이다. 변화를 인정하여 현대에 맞게 많은 측면이 변화한다면 전통의 옛 모습은 사라지므로 보존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하고 반문하고 있다.

젊은 탈춤 연기자들은 어차피 연극이라는 것이 과거부터도 시대의 상황에 맞게 변화해 온 만큼 지금도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현대 청중들에게 외면받는 죽은 유산이 된다는 논리이다.

그러므로 무형문화유산의 전통적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하여 변화를 허용하지 않고 과거의 전통을 재현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허용할 것인가 그리고 허용한다면 어느 정도 까지를 허용하는가 하는 문제는 학자에 따라 집단에 따라, 그리고 개인에 따라 견해가 다르다.

세 번째로 제기되는 쟁점은 무형문화유산들 간의 서열화 문제와 다양성의 파괴이다. 무형문화유산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유사한 변이가 지역적으로 다르게 존재하고 연희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전승되고 연행된다. 그런데 이 다양한 변이 중 어떤 특징의 무형문화유산을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또 그 종목의 최고 예능인을 인간문화재로 지정한다면 지정된 종목과 인간문화재에 의해 표현되는 예술은 전승이 되지 않지만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나 개인적 변이는 전승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국가의 지정 문화재가 된다는 것 그리고 인간문화재가 된다는 것 자체가 문화 권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지정된 종목을 배우려는 젊은이들은 많은 반면 그렇지 않은 종목은 후계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단절되기가 쉽다. 보다 다양한 민속예술을 보존시키려면 지정과 비지정의 관계를 초월하여 다양한 모습의 무형문화유산이 전승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미 언급했듯이 한국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책은 1962년부터 실시되었다. 유네스코는 2003년 무형문화유산협약을 제정하였고 한국도 협약에 가입하였다.

무형문화유산 협약은 무형문화유산을 한 공동체에서 끊임없이 전해 내려오면서 주위 환경, 자연, 역사와 상호작용에 의해 끊임없이 재창조되는 유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가시적 결과로 대표목록등재와 사라져가는 무형문화유산을 위한 긴급보호목록 등재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의 무형문화유산보호제도는 유네스코의 긴급목록에 해당하는 유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다. 사라져갈 위기에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인간문화재라는 무형문화유산 담당자로 하여금 후세에 그 무형문화유산을 전달하게끔 한 제도이다. 50여 년 간의 성과를 보면 사라져갈 뻔 한 많은 무형문화유산이 지금은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는 분야가 많다. 예로 판소리는 지금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으며 판소리를 배우려는 젊은이도 많아졌다. 그리고 학교에 판소리를 가르치는 학과도 생겨서 전승에도 성공한 셈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다.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제도에도 영향을 끼쳤다. 한국에서는 그 동안 사라져가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책에 중점을 두었으나 앞으로는 많은 국민들이 향유하고 단절의 위험이 없는 무형문화유산도 보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즉 유네스코의 대표목록에 등재할 유산을 더욱 발굴하고 그에 맞는 보호제도를 강구하는 중이다.

또한 지정된 당시의 모습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원형유지에 대한 입장도 앞으로는 변화하는 모습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논란은 이미 위의 두 번째 쟁점에서 자세히 논한 것처럼 개인에 따라 집단에 따라 그리고 공동체의 입장에 따라 다 다를 것이고 변화를 어느 만큼 허용할 것인가 하는 답론은 각자의 위치에서 다르게 전개되리라 본다.

한국의 무형문화유산보호제도는 사라져가는 무형문화유산을 무형문화유산 담당자 즉 인간문화재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이 마련되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